

대학성과관리센터 규정

- 2014. 11. 01. 최초제정
- 2016. 04. 01. 부분개정
- 2018. 10. 01. 부분개정
- 2021. 07. 01. 부분개정
- 2023. 10. 01. 부분개정
- 2024. 03. 01. 부분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대학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<개정 2018.10.01., 2024.03.01.>

제2조(목적) 본 센터는 대내외 대학평가·인증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의 질 보장과 지속적 개선, 표준화된 교육환경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대학자체평가(고등교육법 제11조의2)
2.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
3.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평가·진단의 자체평가<개정 2018.10.01.>
4. 학문분야평가인증 지원
5. 기타 본 센터의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대내외적 사업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4조(조직)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센터장
- ②부센터장
- ③위원(연구교수)<개정 2024.03.01.>
- ④행정인력

제5조(구성원 업무 등) ①센터장 및 부센터장의 자격은 대학의 직제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23.10.01.>

-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, 부센터장은 센터 업무의 실무를 총괄한다.
- ③위원(연구교수)은 대내외 평가·인증에 관한 편람, 매뉴얼의 연구, 분석, 개발 등을 담당하고, 자체평가를 수행한다.<개정 2024.03.01.>
- ④센터의 전반적인 실무를 추진하기 위한 행·재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인력을 둔다.

제6조(센터 업무) 본 센터의 업무는 대학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.

제3장 위원회

제7조(위원회) ①센터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규정 제8조의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,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, 운영 등은 자체평가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21.07.01.>

②제3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체평가(진단) 연구위원회는 자체평가규정 제8조의 자체평가위원회로 같음한다.<신설 2021.07.01.>

③평가인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TFT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평가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4장 재정 및 기타

제8조(재정) 센터의 운영 및 평가인증에 필요한 재정은 대학의 예산회계시스템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한다.

제9조(연구비 등 지급) 센터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과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, 학술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삭제 <2021.07.01.>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센터의 설립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규정명칭, 제1조, 제4조제3항,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